###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11. 14.

### 저작권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 목 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문단번호

참조

적용 한1.1

회계논제 1~5

결론 6~7

시행일 한7.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제·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를 구성하지 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 [결론도출근거]

SIC 29의 결론도출근거 (8-10)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는 문단 한1.1~한7.1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 적용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회계논제

한 기업(사업시행자)은 일반대중이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다른 기업(사업허가자)과 체결할 수 있다. 사업허가자는 정부기관 을 포함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일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예 에는 상하수도 시설, 도로, 주차장, 터널, 교량, 공항 및 통신망이 포함된다.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예에는 기업 내부서비스 의 외주가 포함된다(예: 구내식당, 건물관리, 회계 또는 정보기술 업무).

- 2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시행기간(이하 '사업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업허가자가 다음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다.
  - (1) 일반대중이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 (2) 특정 유·무형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사용할 권리. 이러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기 권리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 (3) 사업기간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 (4) 사업기간 초에 부여받은 권리나 사업기간 중에 취득한 권리 또는 두 가지 권리 모두를 사업기간 말에 반환한다. 다만 이러 한 권리의 반환이 적절한 경우에 한한다.
- 3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공통되는 특성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 를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지는 것이다.
- 4 회계논제는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 시하여야 할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 이 해석서 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취득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자산의 리스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무형자산의 취득에 적용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가 적용되는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미이행계약을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가 공시를 다룬다.

### 결론

6 민간투자사업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석공시사항을 결 정한다.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는 매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계약의 내용
- (2)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상 주요 조건 (예: 사업기간, 사용료의 가격 재산정 시점, 가격 재산정 또는 재협상의 결정기준)
- (3) 다음 사항의 성격과 범위(예: 수량, 기간 또는 금액 등의 적절한 사항)
  - (개) 특정 자산을 사용할 권리
  - (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또는 제공받을 권리
  - (대)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할 의무
  - (라) 사업기간 말에 특정자산을 인도할 의무 또는 수령할 권리
  - (마) 갱신 및 해지 선택권
  - (배) 기타의 권리와 의무 (예: 주요 분해수리)
- (4) 당기에 발생한 계약변경의 내용
- (5) 민간투자사업의 분류 방식
- 6A 사업시행자는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과 교환으로 건설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에 인식한 수익과 손익을 공시한다.
- 이 해석서 문단 6의 공시사항은 각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개별 적으로 또는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유형이란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합 을 말한다(예: 통행료 징수, 통신 및 상하수 처리 서비스).

###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7.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할 수 있다.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 SIC 29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Framework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s revised in 2003)	제1016호 유형자산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 산		
IAS 38	Intangible Assets (as revised in 2004)	제1038호 무형자산		
IFRIC 12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 SIC 29 '민간투자사업의 공시(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SIC 29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8 Frameworkl)의 문단 15에서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 능력과 그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Framework의 문단 21에서는 재무제표는 주석과 부속명세서, 그리고 그 밖의 정보도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주석 등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에 대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목적적합한 추가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석 등에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불확실성 및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은 자원과 의무에 대한 공시를 포함할 수 있다.
- 9 민간투자사업에는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공시를 정당화하는 조항들이나 유의적인 특 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통상 높은 수준의 공공 참여를 포함한다(예: 도시 전력 공급). 그 밖의 의무에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예: 발전소)을 건설하고 사업기 간 말에 사업허가자에게 그 자산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유의적인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 10 IAS 1의 문단 112(3)에서는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 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추가정보를 기업의 주석

<sup>1)</sup>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AS 1 문단 7에 있는 주석의 정의에서 주석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와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9호(SIC 29)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는 상설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해석 해석 제29호(SIC 29) '민간투자사업의 공시(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s)'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1.1, 한7.1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과 관련된 문단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열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9호(SIC 29)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029호가 SIC 29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SIC 29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시를 위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1. 적용범위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주석공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가 규정하고 있다.

### 2. 회계처리방법

적절한 주석공시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모든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해석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희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07.11.23. 제정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SIC	29	Service	Concession
			Arrang	ements:	Disclosures	

이 해석서는 다른 기준서의 제정 ·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다른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Amendments to the References to			
	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Conceptual Framework in IFRS			
	대한 개정'	1			
2017.5.22.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IFRS 16 Leases			
	'리스'				